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가격보장에 관한 제도 도입 등〉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66호)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01호)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30호)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05호)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80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41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12
1. 개정안의 취지	12
2. 관련 법안 심사 경과 및 내용	12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14

I. 제안경위

1. 위성곤의원안(2201366)

가.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4.

다. 회 부 일 : 2024. 7. 5.

2. 문대림의원안(2201501)

가.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8.

다. 회 부 일 : 2024. 7. 9.

3. 서삼석의원안(2201530)

가.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21인

나. 제 안 일 : 2024. 7. 9.

다. 회 부 일 : 2024. 7. 10.

4. 임미애의원안(2201805)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7. 16.

다. 회 부 일 : 2024. 7. 17.

5. 박수현의원안(2201880)

가. 제 안 자 : 박수현의원 등 26인

나. 제 안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6. 어기구의원안(2202041)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위성곤의원안(2201366)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

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 문대림의원안(2201501)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 등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補填)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 다.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 선정, 품목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라.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3. 서삼석의원안(22015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한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며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가 부족하여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농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2 및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4. 임미애의원안(2201805)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

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계약생산 지원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5. 박수현의원안(2201880)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붕괴위험이 과속화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업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초래하고 가격의 불안정은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2.3%에 불과하는 등 식량자급 위기 상황도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임산물의 경우 소관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식

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가격안정 제도의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온 것이 현실임.

이에 주요 과일, 채소,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정한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심의·의결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6. 어기구의원안(220204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의 차액 보전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관련 법안 심사 경과 및 내용

같은 취지로 발의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024. 6. 20.)되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 7. 16.)에 회부되었음.

연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회부일)	위원회 상정일	법안소위 회부일
1	제2200016호	윤준병의원 등 10인	24-05-30(24-06-11)	24-06-20	24-07-16
2	제2200088호	이원택의원 등 10인	24-06-03(24-06-11)		
3	제2200260호	문금주의원 등 11인	24-06-10(24-06-11)		
4	제2200301호	황명선의원 등 16인	24-06-11(24-06-12)		
5	제2200569호	어기구의원 등 10인	24-06-18(24-06-19)		
6	제2200585호	주철현의원 등 10인	24-06-18(24-06-19)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6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의안번호 제2200505호 이병진의원안”은 개정안과 취지가 달라 제외하였음.

구분	윤준병 의원 (‘24.5.30)	이원택 의원 (‘24.6.3)	문금주 의원 (‘24.6.10)	황명선 의원 (‘24.6.11)	여기구 의원 (‘24.6.19)	주철현 의원 (‘24.6.19)
제도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의무시행	재량시행	의무시행	의무시행	재량시행	재량시행
대상품목	양곡, 채소, 과일	채소, 과일	주요 농수산물	양곡, 채소, 과일	채소, 과일	주요 농수산물
시장가격	심의위원회 심의, 매년 확정·고시한 가격	-	-	심의위원회 심의, 매년 확정·고시한 가격	-	심의위원회 심의, 매년 확정·고시한 가격
기준가격	평년가격에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고려	평년가격에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기초로 산출	평년가격에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고려	평년가격에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고려	평년가격에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고려	평년가격에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고려
기준금액 결정방법	심의위원회 심의, 매년 확정 고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매년 확정 고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매년 확정 고시	심의위원회 심의, 매년 확정 고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매년 확정 고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매년 확정 고시
예산 확보	농안기금에서 비용 사용	-	농안기금에서 비용 사용	농안기금에서 비용 사용	-	-
	(예산의 범위에서)	(AMS 한도내)	-	(예산의 범위에서)	-	-
시행주체	국가	국가	국가	국가·지자체	국가	국가
위원회	농산물가격안정심 의위원회	농산물적정가격보 장심의위원회	농수산물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	농산물최저가격보 장심의위원회	농산물가격안정심 의위원회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항목	①대상품목의 선정 ②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③차액의 지급비율 ④적정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①대상품목의 선정 ②대상품목의 적정가격, 시장가격 ③차액의 보전비율 ④수매, 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⑤적정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①대상품목의 선정 ②기준가격의 산정 ③차액의 보전비율 ④수매, 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⑤적정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①대상품목의 선정 ②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생산비 ③차액의 지급비율 ④적정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①대상품목의 선정 ②대상품목의 기준가격 ③차액의 지급비율 ④매입, 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등의 결정 ⑤적정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①대상품목의 선정 ②시장가격 및 기준가격 ③차액의 지급비율 ④매입, 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등의 결정 ⑤적정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위원회 구성	15인 이내 (생산자단체 5명 이상)	15인 이내(생산자단체 과반이상), 임기 2년 연임가능	15인 이내, 임기 2년 연임가능	15인 이내 (생산자단체 과반이상)	15인 이내(생산자단체 과반이상), 임기 2년, 연임가능	15인 이내(생산자단체 과반이상), 임기 2년, 연임가능
기타	※ 21대 농안법 대안과 동일	※ 양곡법내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	가격보장제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국회 상임위 보고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 비용 지원	※ 양곡법내 양곡 가격안정제도입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개정안과 유사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위성곤 의원 (‘24.7.4)	문대림 의원 (‘24.7.8)	서삼석 의원 (‘24.7.9)	임미애 의원 (‘24.7.16)	박수현 의원 (‘24.7.17)	여기구 의원 (‘24.7.19)
제도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산물 적정가격제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산물 가격보장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재량시행	의무시행	의무시행	의무시행	의무시행	의무시행
대상품목	채소, 과일	양곡, 채소, 과일	양곡, 채소, 수산	채소, 과일	양곡, 채소, 과일, 목과류, 버섯류	채소, 과일
기준가격	평년가격에 생산 비용 및 물가상 승률 고려	평년가격에 생산 비용 및 물가상 승률 고려	-	평년가격에 생산 비용 및 물가상 상황, 농가 경영 수급 상황 고려	평년가격에 생산 비용 및 물가상 승률 고려	평년가격에 생산 비용 및 물가상 수급 상황 고려
기준금액 결정방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매년 확정 고시	심의위원회 심의, 매년 확정 고시	장관이 품목, 목 표, 가격을 국회 보고 후 → 국회 심의 → 장관 고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고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매년 확정 고시	심의위원회 심의, 매년 확정 고시
예산확보	농안기금에서 비용 사용 -	농안기금에서 비용 사용 -	농안기금에서 비용 사용 -	농안기금에서 비용 사용 (예산의 범위에서)	농안기금에서 비용 사용 -	농안기금에서 비용 사용 -
시행주체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위원회	농수산물가격 안정심의위원회	농산물적정가격 심의위원회	-	농수산물가격 안정심의위원회	농수산물가격 보장심의위원회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항목	①대상품목 선정 ②기준가격의 산 정 ③차액 지급비율 ④매입, 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등의 결정 ⑤적정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①대상품목 선정 ②시장가격 및 기준가격 ③차액 지급비율 ④적정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 측 및 추계 ※ 차액한도 : 60/100	-	①대상품목 및 농가의 선정 ②시장가격 및 기준가격 ③차액 지급비율 ④①~③의 선정 및 확정 주기 ⑤품목의 선정 (①번과 동일)	①대상품목 선정 (확정·고시전, 관계중앙행정기 관장, 시·도지사 의견청취) ②시장가격 및 기준가격 ③차액 지급비율 ④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①대상품목 ②대상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③차액 지급비율 ④적정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 측 및 추계 ⑤①~③의시행 주 기
위원회 구성	15인 이내 (생산자단체 추천 과반 이상), 임기 2년 연임가능	15인 이내 (생산자단체 추천 5명 이상)	-	15인 이내 (생산자단체 추천 5명 이상)	15인 이내 (임산물 담당 고위공무원 5명 이상)	15인 이내 (생산자단체 추천 5명이상)
기타	-	-	지자체 최저가격 보장제 비용 지원	-	생산자 보호 계획 매년 수립 및 국 회 상임위 보고	-

다만, 문대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어기구의원안은 ① 계약거래지원 제도 도입, ② 수매 대상 품목의 확대, ③ 상한가격 예시의 근거 마련, ④ 농산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근거 마련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문대림 의원 (‘24.7.8)	임미애 의원 (‘24.7.16)	어기구 의원 (‘24.7.19)
계약거래 지원제도	▶ 부진한 작황으로 생산자 단체가 생산계약에서 손실 발생 시, 손실의 일부 보전	안 제6조의2	안 제6조제3항 ~제7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제7항 신설
수매 대상 품목 확대	▶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에 한정되어 있는 수매 대상 품목을 과잉생산 된 농산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	-	-	안 제9조
상한가격 예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한가격 예시	-	안 제8조	안 제8조
농산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규정	-	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9조2 신설

6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